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유럽의 경험과 교훈”

일시 2005년 9월 21일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후원 봄빛여성재단, 아시아재단

프·로·그·램

사회: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위원회 부의장

시간	주 제
13:00~13:20	등 록
13:20~13:40	인사말 및 축사
13:40~14:00	「기조발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4:00~14:30	「발표1: 호주사례」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 캐롤린 스펜서, 호주 인신매매반대연합 회원
14:30~15:10	「발표 2: 필리핀 사례」 1)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필리핀의 법적 조치의 이행 -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 인신매매반대연합 부 대표 2) 일본 내 반인신매매 NGO간의 네트워크 증대 - 케이코 타마이, 일본 아시아재단 선임간사
15:10~15:20	휴 식
15:20~15:50	「발표 3: 유럽사례」 유럽지역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 말카 마르코비치,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 근절 운동(프랑스), 유럽 인신매매방지연합 대표
15:50~16:20	「발표 4: 한국사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 정미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대표 - 조진경,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다시함께센터 소장
16:20~17:00	토 론

차례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주최

구분	시간
개회식	09:30-10:00
1차 주제발표	10:00-10:30
2차 주제발표	10:30-11:00
3차 주제발표	11:00-11:30
4차 주제발표	11:30-12:00
5차 주제발표	12:00-12:30
6차 주제발표	12:30-13:00
7차 주제발표	13:00-13:30
8차 주제발표	13:30-14:00
9차 주제발표	14:00-14:30
10차 주제발표	14:30-15:00
11차 주제발표	15:00-15:30
12차 주제발표	15:30-16:00
13차 주제발표	16:00-16:30
14차 주제발표	16:30-17:00
15차 주제발표	17:00-17:30
16차 주제발표	17:30-18:00
17차 주제발표	18:00-18:30
18차 주제발표	18:30-19:00
19차 주제발표	19:00-19:30
20차 주제발표	19:30-20:00
21차 주제발표	20:00-20:30
22차 주제발표	20:30-21:00
23차 주제발표	21:00-21:30
24차 주제발표	21:30-22:00
25차 주제발표	22:00-22:30
26차 주제발표	22:30-23:00
27차 주제발표	23:00-23:30
28차 주제발표	23:30-24:00
29차 주제발표	24:00-24:30
30차 주제발표	24:30-25:00
31차 주제발표	25:00-25:30
32차 주제발표	25:30-26:00
33차 주제발표	26:00-26:30
34차 주제발표	26:30-27:00
35차 주제발표	27:00-27:30
36차 주제발표	27:30-28:00
37차 주제발표	28:00-28:30
38차 주제발표	28:30-29:00
39차 주제발표	29:00-29:30
40차 주제발표	29:30-30:00
41차 주제발표	30:00-30:30
42차 주제발표	30:30-31:00
43차 주제발표	31:00-31:30
44차 주제발표	31:30-32:00
45차 주제발표	32:00-32:30
46차 주제발표	32:30-33:00
47차 주제발표	33:00-33:30
48차 주제발표	33:30-34:00
49차 주제발표	34:00-34:30
50차 주제발표	34:30-35:00
51차 주제발표	35:00-35:30
52차 주제발표	35:30-36:00
53차 주제발표	36:00-36:30
54차 주제발표	36:30-37:00
55차 주제발표	37:00-37:30
56차 주제발표	37:30-38:00
57차 주제발표	38:00-38:30
58차 주제발표	38:30-39:00
59차 주제발표	39:00-39:30
60차 주제발표	39:30-40:00
61차 주제발표	40:00-40:30
62차 주제발표	40:30-41:00
63차 주제발표	41:00-41:30
64차 주제발표	41:30-42:00
65차 주제발표	42:00-42:30
66차 주제발표	42:30-43:00
67차 주제발표	43:00-43:30
68차 주제발표	43:30-44:00
69차 주제발표	44:00-44:30
70차 주제발표	44:30-45:00
71차 주제발표	45:00-45:30
72차 주제발표	45:30-46:00
73차 주제발표	46:00-46:30
74차 주제발표	46:30-47:00
75차 주제발표	47:00-47:30
76차 주제발표	47:30-48:00
77차 주제발표	48:00-48:30
78차 주제발표	48:30-49:00
79차 주제발표	49:00-49:30
80차 주제발표	49:30-50:00
81차 주제발표	50:00-50:30
82차 주제발표	50:30-51:00
83차 주제발표	51:00-51:30
84차 주제발표	51:30-52:00
85차 주제발표	52:00-52:30
86차 주제발표	52:30-53:00
87차 주제발표	53:00-53:30
88차 주제발표	53:30-54:00
89차 주제발표	54:00-54:30
90차 주제발표	54:30-55:00
91차 주제발표	55:00-55:30
92차 주제발표	55:30-56:00
93차 주제발표	56:00-56:30
94차 주제발표	56:30-57:00
95차 주제발표	57:00-57:30
96차 주제발표	57:30-58:00
97차 주제발표	58:00-58:30
98차 주제발표	58:30-59:00
99차 주제발표	59:00-59:30
100차 주제발표	59:30-60:00

차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 9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21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필리핀의 법적 조치의 이행 43

일본 내 反인신매매 NGO간의 네트워크 증대 45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53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57

15. 15

9.....
15.....
21.....
27.....
33.....
39.....
45.....

기조발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적 착취의 개념과 유형
2.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 배경
3.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4.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
5. 결론 및 제언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 법 시행 1년,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도전과 과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평특히여성과아동의매매예방및억제를위한의정서¹⁾와 스웨덴의 '성구매방지법²⁾'을 모델로 삼아 지난 2001년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청원한 법에 기초해서, 다음 해인 2002년 9월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법안 의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1명(1명의 기권)로 통과시킨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개의 법안이 지난 해인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 1년을 맞이하였다.

새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국에 걸쳐서 성매매 집결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며, 나아가 접대문화와 회식문화, 그리고 술자리 문화와 결합한 성 구매 행위가 남성들의 하위문화의 한 유형으로 일상화 되어오면서 광범위한 산업형 성산업을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의 사법부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관행적으로 면책해 왔으며, 그 결과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의식이 일반화되

1)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 Act on Punishment of Purchase of Sexual Service

어 왔다. 한 예로, 2001년 8월 윤락행위 알선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담당 한 대전지법의 판사는 “.....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범죄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각이유서를 발표 하였다.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의 사법당국의 법 집행 관행 또한 대부분 수사의 초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성들에게 강제된 채무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착취는 외면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채권채무관계로만 인식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들이 오히려 사기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도록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체계는 한국의 성매매가 인신매매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가’와 함께 ‘실력적 지배’를 동반하고 있음을 간과하여, 타인의 성매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기생하는 소개업자와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실행이 선포되지 않는 경미한 처벌에 그쳐왔다.

단적으로, 기존 법 하에서는 성매매 업주가 받는 벌금형의 최대액수가 259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실제 1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면서 한 달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성매매 알선업주들에게 벌금은 일종의 고정적인 영업비용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따라서 업주와 경찰 등 공무원과의 유착 및 정기적인 상납 고리가 이로부터 형성되어 법 집행과정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방지되기 보다는 음성적인 착취 고리와 상납을 위한 유착비리가 더욱 발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포주, 알선업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에 따른 판례는 한 번도 성립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법당국의 법 집행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이렇듯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와 모순, 성매매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성산업의 확대,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으로 규정해온 사회적 관행과 문화, 특히 성매매 알선 및 성 구매 남성에 대한 관용과 면책은 일방적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과 결합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가 지배적 형태인 성매매를 지난 40년 동안 사회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30여명의 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화재가 난 업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알선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 여성폭력 전문가, 법률가 등과의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한 형태로 규정하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알선행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5년여에 걸친 노력 결과로 법 제정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지배적이었던 성매매 문화를 바꾸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 성산업의 위축과 그로 인한 관련 업체들, 예를 들면, 위스키 제조업체, 숙박업소, 모텔업, 대출은행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정부의 일부 관료와 경제학자,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은 ‘경제를 모르는 법’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성매매 집결지 주변의 미용실, 세탁소, 노점상, 식당 등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생존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노력과 ‘여성의 성적착취와 폭력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대립시키면서 법 제정을 부정적

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GDP의 4.1%(2002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달하는 성산업과 주변 산업에 당연하게 미치게 될 파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산업의 위축과 퇴조는 오히려 지금까지 사회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산업을 퇴출하여 산업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이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이 분명하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통한 생존권'과 '성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 알선업주들의 조직인 '한터'가 여성들을 동원하여 개최한 집회를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집회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들의 주장이 진정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여성운동은 이들의 주장이 '성매매를 넘어선 삶을 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부정한 채, 성적 착취와 폭력을 허용하는 여성들의 삶을 고착화시키는 반 여성인권적인 요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성 노동자'의 생존을 내세우면서 알선조직 범죄와 성 구매를 허용을 요구하면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일부집단의 목소리는 결국, 국내·외로 확대되는 성산업 업주들의 조직적인 여성폭력 범죄와 성적 착취를 용인하는 문제점을 외면하며, 따라서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 받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사회적으로 간간히 터져 나온 법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성산업의 퇴조를 우려하면서 성산업의 팽창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토대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반사회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철저한 법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무력화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낙관적 기대는 정부의 철저한 법 시행과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다 강화되고 유연한 지원정책이 일관되게 이행되지 않

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법 시행을 위한 노력과 전담 기구의 설치 그리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법 시행과 이러한 도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성 문화와 성 의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식개선 캠페인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성매매 수요 근절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성매매 거래량은 1억7천만 건으로, 이로 인한 연간 매출액은 24조원이며, 성매매 업소 수는 80,100개로 한국의 중소기업(2000년) 2,854천개의 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성매매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최소한 3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30대 여성인구 8,090천명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취업여성 인구 4,124천명의 8.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특히 24조 712억 원에 이르는 성산업 매출액 규모는 2002년도 국내총생산(GDP) 578.8조원의 4.4%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농림어업의 비중(2001년 기준 4.4%)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성산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2차 대전 이전부터 시작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동원과,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에서 서의 외국군대에 의한 성적 착취는 여성 인권침해를 초래한 근원으로 작용해왔다. 1961년 군사혁명 이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지촌 성매매를 보호하고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매매를 금지한 법 정신과는 반대로 성매매가 전 국토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은 '밀실정치'와 '요정정치'로 일컬어지는 부패와 비리의 매개로 서 유흥과 접대향응을 수단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는 국가권력에 의해 확산되어 나갔다. 이렇듯 지배적인 남성 중심적인 군사문화 속에서 1960년대 후반 이

후 80년대까지 수출중심 경제성장과정에서 성매매는 일본인 등에 의한 기생관광의 유치, 한국기업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반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은 '성매매 여성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성매매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왜곡된 경제성장논리 하에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외국군대의 수요에서부터 근원을 갖게 된 이후, 한국사회 내로 확산되어온 성매매는 80년대 이후 소비성 서비스업의 증대와 향락산업의 기형적 팽창과정과 맞물려 급속히 규모가 확장되었다. 유흥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고 자금회전이 빠르며 세무행정이 허술하다는 점에서 자본투자의 선호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유흥산업은 한국특유의 접대경제와 맞물려 정경유착, 부정부패, 그리고 불법적인 각종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지하경제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80년대에 한국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모는 외국에 비해 1백배 정도 큰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고, 그 과정에서 성산업은 더욱 팽창하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완화되었고, 그 외중에서 식품접객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업시간의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특히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매매 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불법 무등록 직업소개소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유흥산업이 더욱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국가권력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주역이 된 왜곡된 현실이 40년 넘게 지속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성매매는 불가피한 것'이자 법적 규제는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2001년 여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1.3%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또한 2003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42%가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그리고 12.9%가 접대 관행상 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한국의 성산업은 남성에 대해서는 가부장적 남성 권력과 우월성을 확인시키는 성적 환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성의 상품화'와 '성적 대상화'를 확산시키면서 폭력적인 성의식과 성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역사적, 구조적으로 성매매를 확산시켜온 성산업 수요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법의 철저한 시행과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과 정책 자체를 흔들고자 하는 성산업의 로비와 법 시행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성산업을 지역과 사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대책 수립과 이행,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3. 여성인권보호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법 시행 1년 동안, 과거와는 달리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알선범죄는 처벌받고, 성매매 피해여성은 국가로부터 보호·지원받을 수 있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이며,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성 평등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000년 이후 민간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지역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의 대

부분은 청소년시기 폭력과 빈곤으로 인한 가출 또는 저 연령, 저 기술, 무 경력의 청소년들에게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광고 및 직업소개소, 기타 업소 주변인들의 유인에 속아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매매시장에 유입된 여성들은 신체적인 위협과 폭력, 강간, 납치, 강요, 공갈, 본인 및 가족에 대한 협박, 포르노그래피에 이용 등 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주들은 교묘하게 계속해서 여성들의 빚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여성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나아가 '차용증'과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은 상태에서, 탈성매매를 시도할 경우, '사기범'으로 고발당하는 것이 현실이나 정보제공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의식교육과 홍보 활동의 초점은 여성에 대한 성의 상품화와 성매매를 일상화하는 환경, 즉 성문화와 소비문화 전반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성산업의 유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이 언론과 학교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 시행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성매매 여성이 당하는 성적 착취와 폭력에 대한 보호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전통적인 성매매 유형의 퇴조와 함께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사회적으로 축소, 근절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포괄적이고 철저한 법 집행,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성매매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성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방향은 크게 3가지 방

향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또는 신중 형태를 망라한 일체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기소와 성구매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 사법당국에 의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의식 개선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언론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성매매 방지 종합정책은 정부와 사법당국 그리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적 참여와 협력이 없다면 성산업과 성매매 알선행위는 효과적으로 퇴출되어질 수 없고, 동시에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 평등한 성문화 및 성의식은 확산되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법에 대한 성급한 회의론을 제기하는 조급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1999년 '성구매방지법'을 제정한 스웨덴에서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구닐라 엑버그 Gunilla Ekberg 스웨덴 정부 인신매매 자문관의 지적은 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를 향해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Faint,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발표 1 호주사례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Faint,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캐롤라인 스펜서, 여성 성매매방지연대(호주)

1. 머리말

20여 년 전, 1984년에 호주의 빅토리아주(州)는 집결지 성매매를 합법화 하였다. 빅토리아는 460만 명 인구를 보유, 호주 제 2의 도시인 멜버른을 관할하고 있다. 이후, 1992년에는 수도인 호주 수도 특별구(ACT)가, 1999년에는 퀸즐랜드(수도는 브리즈번, 브리즈번은 인구 170만 명의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집결지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1995년에는 뉴 사우스 웨일즈(6백만 인구의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를 관할)도 집결지 및 거리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빅토리아 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자 자신이 이곳이 출신지이기도 하면서, 호주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집결지 성매매 합법화 시행법이 가장 포괄적이고도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에서 거리 성매매가 여전히 불법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984년 빅토리아 주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의 급증, 비통계 구역에서의 에이즈(AIDS)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1994년 2명의 성매매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인해 성매매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빅토리아 주 정부는 성매매 합법화를 재고하기 보다는 다른 방

법을 모색, 1994년 '성매매 관리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성매매 등록 창구와 면허료 등의 장치를 도입하여, 집결지와 에스코트 성매매¹⁾를 전면적으로 관리체제 하에 두었다. 이 법안의 표면상 목적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가상적 이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법안이 의도하는 목적은

- 집결지 내 범죄행위의 확산 및 불법적인 성산업 방지
- 한 개 이상의 집결지 업소를 운영할 수 없음을 보장
- 보다 작은 규모의 집결지 장려
- 성매매의 건강 및 안전한 측면 설명
- 거리 성매매로 인한 여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폐단적 측면 완화

1994년, 정부 주도의 성매매 합법화 시행의 확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 법무장관은 정부가 '모든 형태의' 성매매에 반대하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성매매는 법이 어떠한 간에 수요가 있는 한 지속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장관은 빅토리아 주의 성산업 합법화의 효과를 크게 과소평가하였다. 성매매는 지속될 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성매매는 멜버른 시의 경제, 문화적 환경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05년까지 성매매 합법화의 성과는 원래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성매매 합법화는 빅토리아 주가 성 산업 유치에 적극적인 사업 및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멜버른은 호주 성 산업의 수도가 되었다. 성 산업은 이제 대중문화, 정부, 도시의 거대 산업들과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 나는 성매매의 합법화 시행의 이득을 주창하는 잘못된 인식을 차례차례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성매매 합법화 시행 20년에 맞춰, 이러한 잘

1) 티켓다방의 형식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을 일정한 장소로 불러서 하는 주문형 성매매 형태를 의미한다(역주).

못된 인식을 폭로하고자 한다.

가. 합법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유지시킨다(성매매 금지는 음성적인 병폐만을 키울 뿐이다)

1) 성 산업의 확산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의 성장을 부추긴다. 성매매 합법화 시행 이후 빅토리아 주의 집결지 수는 크게 늘어났다. 빅토리아 주의 합법적 집결지 성매매 업소의 수는 1989년 40개에서 1999년 94개로 늘어났다²⁾. 2002년까지, 80개 이상의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업소뿐 아니라, 영업 중인 집결지 수는 2배로 증가하였다. 빅토리아 주의 법적인 성 산업은 또한 확산 일로의 불법적 성 산업의 최전방에 서게 되었다. 경찰이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 오늘날 빅토리아 주에는 95개의 허가된 집결지와 400개의 불법 집결지(246개소 증가)이 있다. 또한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업소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1985년 37개소에서 2003년 130개로 증가), 5,000명가량의 여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까지, 성매매 여성 1~2명이 등록된 집결지의 수는 1,688개로 늘어났다.

1994년, 빅토리아 주에는 약 3,000~5,000명의 여성이 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수치는 1991년 6,000명으로 늘어났고, 이들 중 2,000명은 불법 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수치에 근거하여, 오늘날 이 분야에 10,000명 정도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에는, 매주 61,000명 정도가 불법 집결지를 찾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수치는 1985년 45,000명에서 증가한 것임), 주당 평균 700만 호

성산업의 확산

2) 줄리 빈텔과 리즈켈리(2003), 4개국(호주 빅토리아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비판적 조사, p13

주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다.

1991년, AIDS 관련한 한 정부 간 회의에서는 빅토리아 주의 불법 성 산업의 가치가 연간 7,500만 호주달러 정도라 추산하였다. 호주 성 산업은 1998년 연간 12억 호주달러의 매출액을 내는 것으로 추산했다. 1994년 정부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성매매의 부분적인 합법화 결과, 불법 성매매가 급격히 확산되어 빅토리아 주 성산업의 적어도 2/3 정도가 불법이다. 1994년의 동일한 정부 검토에서는 3,000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이 불법 집결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고, 빅토리아 주에서 규제대상 이외의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 업소의 성매매 여성은 최대 5,000명까지로 추산하였다³⁾. 경찰은 2002년까지 400개 이상의 불법 집결지가 있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성매매 관리 법' 하에서 불법 집결지 단속에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성매매 합법화는 다른 형태의 성매매, 특히 스트립쇼의 확산을 야기하였다. 1994년, 빅토리아 주의 허가된 업소에서의 성적 향응/공연이 주류 판매 허가 위원회로부터 승인되었다. 그러나 1997년 무렵, 신문에서는 '스트립쇼 산업의 범죄적 침투 성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보도하였다. 주류 판매 허가 위원회에서는 '스트립 쇼 업소를 단속하거나 이들 업소의 실제 업주를 조사할 자원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성매매 단속 위원회는 스트립쇼 단속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97년, 성매매 관리법 자문 위원회에서는 스트립쇼 업소의 성장이 우려할 사항이라 간파하였다. 불법 성매매는 스트립쇼 업소에서 이루어졌다.

관리감독은 스트립쇼 업소가 이 도시의 문화와 경제 영역에까지 스스로의 굳혀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업소들은 이제 앞장서서, 성매매의 영역을 새로이 넓혀가고 있다. 이는 남성들이 성매매 행위를 터득하는 훈련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3) 줄리 빈델과 리즈켈리(2003), 4개국(호주 빅토리아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비판적 조사, p12

에 부가된 것이다. 이러한 업소는 일반적으로 조직 범죄와 연계되었고, 경쟁 기업들은 서로에게 방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성매매 산업에서 이 분야에서의 심각한 범죄적 연계에도 불구하고, 호주 은행 지점장은 매일 스트립 쇼 클럽에 드나드는 것을 업무적인 지출로 청구할 수 있고, 스트립 쇼 업소는 업무상 회의로 인기 있는 곳이 되고 있으며, 많은 업소들이 사업상의 기능을 위한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성산업이 '일'의 다른 영역들을 침투하여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호주 직장의 심각한 남성주의적 문화에 대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2) 관리의 부족

호주의 각 주마다, 성매매 합법화는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합법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집결지는 규제 위원회에 면허증을 신청하고 면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 제도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지방 당국이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는 한 집결지 면허를 내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 민주주의 영역을 배제하는 것이다. 시민들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거리에 집결지를 조성하는 것을 강행할 수 있다. 일단 성매매가 합법화되던지 비범죄화 되기만 하면, 경찰이 합법적/불법적 집결지를 감시해야 할 공식적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다. 모두 지방 정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 집결지의 규제권이 경찰에서 지방 위원회 및 기획 규제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위원회는 집결지에 조사관을 투입하여 불법 영업자를 소탕하고 기소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들 구조하기 위한 자금이나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 2003년에는 불법 집결지에 대해 민간 조사관이 수집한 증거는 법정 제출이 불가능한 증거로 간주하는 법정 판결이 있었고, 이는 지방 관할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26개소의 불법 집결지가 적발되었다⁴⁾. 다른 지방에서 있

었던 불법 집결지에 대한 조사에는 42,000 호주달러 정도의 세금이 사용되었다.

지방 정부는 또한 합법화된 구역의 영업에 관한 세부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에서는 업소 손님의 차량 주차, 외관 조명, 집결지 광고 표지, 건강 및 안전, 출입구, 집결지 위치 및 디자인, 소음 및 소란 요소,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콘돔의 품질, 윤활유 및 수건, 모든 금전적 거래 등이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있다. 비록 지방 조사가 규칙적으로 집결지를 감시하는 것은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 것을 보여준다.⁵⁾

3) 아동 성매매의 확산

1998년 국제기구인 아동 성매매 및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모임(ECPAT) 호주 지부에서는 빅토리아 주가 '상업적 성적 활동'에 연루된 아동 수가 뉴 사우스 웨일즈의 754명과 비교 할 때, 1,205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것은 뉴 사우스 웨일즈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 두 주의 큰 인구격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였다. 이 기구는 또한 빅토리아 주 집결지에서는 미성년자들이(불법 집결지 14명, 합법적 집결지 4명) 발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자체의 업무가 줄어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로 인해 성매매가 아동에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성매매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직업이라는 생각은, 정부가 빈곤하고 취약한 여성들에게 또 다른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여지없이 저하시켰다. 물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건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매

4) 불법 집결지 방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력부재(Monash시 위원회 홈페이지 '03. 7. 17일자 내용) [http:// www.Monash.vic.gov.au/news/media2003/media3103.html](http://www.Monash.vic.gov.au/news/media2003/media3103.html)

5) 줄리 빈텔과 리즈켈리(2003), 4개국(호주 빅토리아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비판적 조사, p14

매의 합법화는 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주 정부는 여성들을 성 산업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부추겨 왔던 성 산업 내 여성이 이동일 때 받아왔던 학대와 상해를 효과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은 아동기 또는 유년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았다. 성적 학대로 인한 여성의 성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의 붕괴는 이들이 성 산업으로 발을 들여놓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성 산업의 유명세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합법적인 고용의 하나이며, 경제적 생존의 한 수단으로서 받아들이게끔 부추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이 18세가 넘으면 착취의 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단지 여성의 '선택'으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데 일조한다. 여성의 생존이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버리는데 달려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은 성매매의 합법화 논리 하에서 정당화 된다. 아동의 성도 이와 비슷하게 직업이라는 이름하에 상업화되고 매매된다는 사실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된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심지어 아동들도 존경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이 '전문화' 되어가고, 지역사회의 공공 복지와 개입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들과 아이들을 성매매로부터 지키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4) 인신성매매의 확산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해외 여성들을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로 구인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다. 인신매매자들은 전 세계 여성에게 호주는 합법적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성 산업 국가라고 말 할 수 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성매매 영역에서 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전해 듣지 못하고, 그

들이 어떤 영역에서 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로 인해,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게 되는 데, 왜냐하면 여성들은 불평할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 산업은 합법적이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발견된 합법적 집결지는 가공할 만큼 규제가 취약하여 명의만 바꾸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호주의 엄격한 이민 정책은 경찰이 인신매매된 여성이 팔리고 있는 집결지를 적발해낼 지라도, 출입국 관리소는 인신매매법에 대한 기소를 위해 나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원은 인신매매된 여성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1998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67명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호주에서 출국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민 담당자는 빅토리아 주에 25명의 불법 성매매 여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⁶⁾. 2002년에서 2003년도에는 적어도 7개의 허가된 집결지에서 인신매매된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호주의 한 범죄학 협회 연구에서는 호주 집결지에서의 불법 성매매로부터 매주 100만 호주달러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빅토리아 주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으로부터 조직범죄를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조직범죄에 의해 여성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앞세워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 경찰과 합법적인 집결지 산업으로부터의 추산치를 합하면 불법 집결지의 수가 400 개소에 이르며 이는 합법적 집결지 수의 4배에 이른다⁷⁾.

6) 'The Age' 지 Russia for Love에서 발췌(1998. 3월 29-30일자)

7) 줄리 빈텔과 리스켈리(2003), 4개국(호주 빅토리아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비판적 조사, p15

5) 성 산업의 기업화

성매매 합법화는 대기업형 집결지 성매매를 조장한다. 이는 또한 성산업의 여성들이 본래 처음부터 주창하였던 형태인 임대인-임차인을 기반으로 한 성매매의 성장을 저하시켰다. 실제로 빅토리아 주의 단지 7%의 집결지만이 여성들이 관리하고 있다. 집결지 조성 규정상, 집결지는 주거 계획 지역의 외곽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각자 개인 주거지에서 집결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이 집결지가 적절히 밀집된 지역에서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것은 분명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주의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창가인 '더 데일리 플래닛(The Daily Planet)'은 2003년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 빅토리아 주에서 집결지는 이제 특화된 성산업 규제위원회 보다는 기업 면허청의 인가를 받게 된다. 기업 면허청은 부동산 중개소, 자동차 거래상, 여행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업의 면허를 감독한다. 그들은 성 사업가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악용하는 허점에 관해 문의한들이며, 그 결과 많은 성 산업 사업체들이 여러 개의 (불법) 집결지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조세청 또한 균등 비율 지불 조세체계를 제공해주면서 집결지 기업이 정신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용 원천 과세 체계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폭력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호한다. (피해의 최소화)

성매매 여성들은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는데, 한 가지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가 지불되거나 또는 '상업적' 폭력은 매일 매일의 모든 성매매에 포함되는데,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된 여

성은 생존을 위해 항상 자신의 활동과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합법적인 집결지 안에서의 보상받지 못하는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보상받지 못하는 폭력의 한 예는 멜버른의 최고급 집결지인 '더 데일리 플래닛'에서 발생했는데, 이곳은 방 안에 여성들이 경비원을 호출할 수 있도록 경보 버튼이 장착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들은 단지 자신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집결지 경비원들이 지방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자신들은 벨이 울리면 달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폭력은 이미 가해진 후였다. 1990년도에 범죄학 협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합법적 집결지의 많은 성매매된 여성들은 큰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하게 1994년 빅토리아 주의 한 NGO단체가 벌인 조사에서도 상당 비율의 여성들이 손님들과의 '대부분 또는 어떤 시간'에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 주 성매매 여성 상호회'에서는 매주 최고 15건의 성매매된 여성들이 당한 강간 및 폭력제보를 받았었다.

성매매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규제 법안의 원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주의 정부 차원의 집결지에 대한 규제는 성병을 진단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STI 진단을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아야 하는데,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진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집결지 여성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던 경험에 비추보면, 성매매가 처음으로 합법화 되었을 때, 의료진들이 집결지를 방문하여 STI 진단을 해주곤 했었지만, 이들 서비스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내 의원을 찾아가야 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빅토리아 주에서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여성의 수가 91% 증가하여, 전체 인구수에서는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멜버른에서의 한 연구에서는 남성 손님의 40퍼센트가 성매매 여성과 성

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⁸⁾.

인신매매된 여성을 포함하여 합법화된 성 산업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 산업 내 많은 여성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안전장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항문섹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고, 이것은 성매매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99년 무렵에는, 남성 5명중 1명이 여전히 빅토리아 주의 성매매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더구나, 모든 합법적인 집결지에서 콘돔 사용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2000년에 빅토리아 주의 공공 일자리 보험사인 Work Cover사는 성매매 여성이 안전장치 없는 성관계를 강요당한다는 불만 신고 때문에 경찰과 함께 집결지를 불시 검문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비위생적이고 때로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기를 강요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호주의 정부 및 민간 산업이 크게 주목해온 OHS(직업상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적인 정책 제도를 합법적인 성매매 산업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성산업의 범주 안에는 폭력과 성적 학대, 신체 및 정신적으로 감시되지 않는 집결지 뿐 아니라,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 또한 합법적 성산업 내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호주의 OHS 지침서는 '오직 실제 적용 가능한' 산업에만 적용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집결지 성매매와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의 모든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확장된 OHS 가이드라인이 근절하고자 하는 정규적 노동의 정확한 측면들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뿐 아니라, 합법적인 집결지 산업에서 장려되어 왔다. 위험성이 큰 산업으로서의 성매매는 위험성이 큰 성적 기회를 남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거두어 들인다. 때문에 OHS 기준을 진지하게 성 산업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이는 성 산업에는 신체 및 정신에 있어서의 엄격한 직장 규칙, 성적 학대, 안전하지

8) 줄리 빈델과 리즈켈리(2003), 4개국(호주 빅토리아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비판적 조사, p17

않은 일터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결지 성매매와 관련하여 이 지침서가 무의미하다면,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은 명백하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 산업은 여성이 성구매자의 개인 집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개개인의 집에서는 안전, 위생, 기타 보통의 작업장의 건강 및 안전 목표 중 그 어느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에 소속되어 있는 주정부 성매매 복지 단체인 '성 산업의 건강 및 교육 원조'(RhED)에서 출간한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 종업원들을 위한 안전 지침서에서는, 단지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직업상 안전과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이 단체는 자신들을 '빅토리아 주의 성 산업을 위한 서비스'라 묘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건강, 교육, 지원,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들 가운데서의 연대를 추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 단체가 에스코트 성매매 알선 종사자들을 위해 웹상에 게재하였던 안전을 위한 충고들은 아래와 같다.

- 펜, 호루라기, 호흡 스프레이는 좋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도망칠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 손님을 접대한 지 10분 안에 자기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라. 손님과 단 둘이 있는 순간부터,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하라. 이것은 손님이 난폭하게 행동할 때라도 종종 상황을 주도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 운전기사가 아니더라도, 문밖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대기하고 있음을 손님에게 알려라.
- 직접 운전 할 경우에는 차량의 뒷편만이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주차를 하라. (예를 들면, 나무나 덩굴 뒤에 차를 주차시킨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라디오를 켜 놓은 채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손님에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대기 중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 소지품을 현관 근처에 한 더미로 쌓아놓아 빨리 도망갈 필요가 생길 경우에 소지품을 집을 수 있게 한다.

거리의 성매매 여성

성매매의 합법화가 거리의 성매매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성매매의 정상화로 인해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집결지 업주들이 서비스를 종종 금지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리 성매매의 여성들을 더욱 가두어 두는 것이고, 거리 성매매와 집결지 성매매 사이 간격은 약물의 사용 유무로 확연히 정의된다. 약물 복용 습관이 있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집결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성매매의 정상화가 확산되면서, 성 산업의 2/3이상이 불법인 상황과 강압과 통제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폭로하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탈 성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약물을 복용하는 여성들은 합법적 집결지의 규칙과 요구사항을 좀처럼 준수할 수 없다. 또한 일정비율의 손님들은 거리의 성매매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거리 성매매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심각한 약물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는 이런 여성들을 더욱 범죄화하고 가장자리로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빅토리아 주의 면허 위원회가 창립 이래로 거두어들인 900,000 호주달러 중에서, 법안의 원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탈 성매매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자금은 하나도 없다.

합법화는 성매매에 대해 계몽적이고 진보적인 대응이며, 낙태 찬성론자의 '도덕주의적인 반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빅토리아 주의 집결지 성매매의 합법화로 인해, 멜버른시의 문화적 분위기를 성 산

업을 포용하고 소위 성인 가게, 포르노물, 스트립 쇼 업소를 장려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았다. 플레이보이 로고가 새겨진 셔츠는 인기상품이며, 멜버른 지방 라디오 방송국(3RRR)은 매년 성매매 여성이 스튜디오에 초대되어 남성 전화통화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이 속한 집결지를 광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리얼리티 TV 쇼 '빅 브라더'의 호주버전의 스타들 중 한 명은 전직 스트립 쇼걸이었고, 이 사실은 쇼가 진행되는 동안 강하게 부각되었다. 몇 년 전에는 멜버른 대학에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고 있는 여학생 위한 단체가 생기기도 했었다.

빅토리아 주 성 산업의 초 기업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산업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 특히 스트립 쇼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성산업 외부에 있는 여성을 위해 '매일' 막대 댄스(Pole dance) 교실이 열리고 있으며, 상업적 성의 근사함은 인기 있는 언론 및 대체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이번 년도 멜버른 언더그라운드 영화제('근사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사)에서 영화 "The Money Shot"이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멜버른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주류 영화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를 제작하는 어느 영화학교 졸업 여성에 관한 것이다. 이 영화는 '여성 산업의 포스트 페미니스트적 모험 훌륭히 그린' 작품이라고 묘사되었으나, 실제로 이 영화는 그저 최신의 대중 문화 아이콘을 코드로 하는 포르노 영화일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오랜 경력의 포르노 배우인 피터 스테판 (Peter Stefanou) 역시 호주의 주류 TV와 광고 캠페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건전한 남자 가수인 존 파른햄 (John Farnham)과 같이 출연하기도 하였다.

멜버른시의 관광 책자인 'This Week'는 보통 적어도 3페이지 정도가 성매매 광고이다. 멜버른은 성매매에 반대하는 '도덕적' 도시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 거세다⁹⁾. '성노동(sex work)'라는 용어는 언론과 일상 대화에서 거의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에서 호주사람들의 성매매에 대한 변화하는 태도에 관해 2003년 벌인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점차 성매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996년 멜버른의 주요 신문인 'The Age'에서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에 관해 다룬 기사에서는 '음란물과 성매매가 그저 또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며, '좋은 싫든, 섹스 워크는 주류로 흡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자발성(agency)'을 존중하고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과의 연대를 정책적으로 표명한다

빅토리아 주의 성매매 여성 상조회는 원래 호주에서 성매매 산업이 합법화되기를 오히려 원치 않았다. 그들에게 합법화란 조세뿐 아니라 STI 검사 등을 통한 규제 등과 같은 주 정부 차원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합법화된 집결지 내 '근무' 조건을 통제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손님'들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을 등록시키고 세금을 내게 하여 그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합법화로 심지어 폭력과 갈취가 더욱 심해지고, 성 산업에서 탈출하려는 것이 방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1998년 성매매로 인해 세입상 1억 호주달러의 손실을 겪었는데, 이는 성 산업의 여성들이 합법적인 개인 거래나 또는 하도급자로서 등록함으로써 성매매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로 여겨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9) 줄리 빈텔과 리즈켈리(2003), 4개국(호주 빅토리아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비판적 조사, p17

성매매의 합법화로 성 산업 기업가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
는 반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이점도 갖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집결지 성매
매 여성들을 집결지의 '하도급자'로서 지정해 놓기 때문에 가능하다. 집결지 소유주
들은 이로 인해 종업원 고용에 따른 세금 및 OHS 요구사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는 1997년 집결지 종업원을 불공정 해임 청구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로 여기는 호주
법정 판결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어느 대학 교재에서는 멜버른의 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주 당국과 주민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일'로부터의 세금을 통
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서는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면 누구나에 대해서 분개하
고 있다.

1991년 빅토리아 주의 성매매 여성 상조회에서도 합법적 구역에 대한 간섭이 증가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위험성이 큰 불법 구역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였다.

1996년 집결지 여성과 거리 성매매에 관한 조사에서는 64%의 여성이 성 산업을 떠
나기를 원하고 있으며, 57%는 적극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드러
났다. 거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여성은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큰 장
벽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이 거주지가 없고, 약물에 중독되었으며, 성매매로 적발되
어 벌금을 내야 되면, 벌금과 징역형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다시 성매매를 해야 하
는 악순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구조의 '폐해'를 줄여주고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한다**

1997년에는 20~50명 정도의 13세에서 18세 사이의 호주 아동들이 거리 성매매에 대
대적으로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hild Wise'라는 지역사회 단체에서 2002

년도에 벌인 연구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1,205명이 빅토리아 주의 상업적 성에
이용되고 있었다.

집결지의 합법화로 인해 성매매가 공공적인 경관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릴 지는 모르
나, 이것이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더욱 번성하게 된 거리 성매매를 설명해주지는 못
했다. 멜버른은 현재 400명의 거리 성매매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1
년도에는 주 법무장관이 거리 성매매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치로서, 거
리 성매매 자문 단체를 설립하였다. 남성 성학대자들은 주택 현관 앞마당에서 성매
매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용하였다. 사용된 콘돔과 분비물, 주사바늘 등의 문제가 발
생했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은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을 묵인해주
는 지역과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지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러한 안전한 집은 자선시설 형태로 운영되기를 바랐으나 결과적으로 주(州) 관할 집
결지가 되었다.

성매매 합법화로 경찰은 불법 성산업 구역을 단속할 시간과 재원에서 해방되었다

빅토리아 주 경찰의 '도박과 성매매 단속팀'은 1999년 중반에 해산하였다. 이것은 성
산업에 초점을 두어 단속하는 특별 경찰팀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단속팀을
해산시킨 이래로, 대부분의 지방 경찰서는 불법 집결지에 대한 불만사항을 지방 위
원회로 넘겼고, 이 지방 위원회에서는 집결지를 단속할 재원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
하고 있다. 더군다나, 성매매 합법화는 불법적 성 산업 구역을 확대시켜 경찰의 일거
리만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이 시점까지도 호주에서 인신매매된 여성
이 발견되는 합법적 집결지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고용과 직업 건강 및 안전 보호 권리를 누리게 해준다

합법화를 통한 성매매 기업화는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집결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하도급자로 여겨지고 있지, 종업원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결지 관리인들은 종업원 보호에 책임일 없다고 주장한다. '주류, 접대 및 기타 근로자들의 조합'에서는 1995년 성매매 여성들도 조합에 가입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호주의 집결지 내에서의 그 어떤 형태의 집단 조직화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 내 여성의 지위 향상에 이득이 된다

집결지 성매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법화가 20년 이상 시행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호주 사회의 여성의 지위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 적어도 스트립쇼가 그저 유흥거리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스트립쇼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모호하기에, 내 후배 중 한 명은 나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또래 심야 파티의 일환으로 스트립쇼 클럽에 갈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는 이 말을 18살 학생 앞에서 전혀 주저 없이 말했다.

성매매의 합법적이고 상업적 현실이 뜻하는 바는, 이 전에 불법 성매매와 전혀 연관이 없었을 지도 모를 빅토리아 주의 남성들이, 이제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구매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합법화는 남성에게 쓸모 있는 여성의 '법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빅토리아 주에서 집결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정책은 정책의 모든 원래 목표에 심각할 정도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주 내 모든 여성의 지위, 삶,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있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사실, 성매매 문화는 재계, 거리 광고판, 지방 언론에 확산되었고, 성매매 여성이 그들의 남성 손님들과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남성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 영향을 끼친다. 성매매 합법화는 남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정상화 하였다. 이러한 수용적 분위기의 결과, 테이블 스트립 클럽은 1993년 빅토리아 주로 이전하여, 이제는 '신사들의 클럽'이라고도 불리우며 번창하고 있다.

성 산업이 성장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이 젊은 남성 고객층이 성매매 행위에 소개되고 있다. 합법화로 인해 분명,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 여성들은 성매매가 특정 여성계층들을 위한 용인된 근로 형태인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또한 합법화로 인해, 전체 남성 세대는 이와 같은 여성 집단을 성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 살게 될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집단은 결국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빅토리아 주의 예가 보여주는 것은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 산업이 모든 여성의 삶에 있어서 전체적이면서도 피해를 입히게 된 부분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주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된다.

성매매 윤리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확립된다.

1.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필리핀의 법적 조치의 이행

2. 일본 내 反인신매매 NGO간의
네트워크 증대

성매매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제10조 제1항
의제조 제1항 제1호

의제조 제1항 제1호 제1호

제10조 제1항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필리핀의 법적 조치의 이행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 인신매매반대연합 부 대표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필리핀의 법적 조치의 이행에 관하여 필리핀은 2003년 성매매방지법(Republic Act No. 9710)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법(Republic Act No. 9208)과 함께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필리핀은 2003년 12월 17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법과 함께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필리핀은 2003년 12월 17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법과 함께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필리핀은 2003년 12월 17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법과 함께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필리핀은 2003년 12월 17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법과 함께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필리핀은 2003년 12월 17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법과 함께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필리핀의 법적 조치의 이행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 인신매매반대연합 부 대표

필리핀의 인신매매 방지법인 공화국법 9208(Republic Act 9208)은 2003년 5월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9일 발효되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CATW-AP(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아시아 태평양 연합)을 주축으로 한 여러 여성단체와 생존자들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싸웠다.

RA 9208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며, 인신매매범과 송출업자, 건물 소유주, 포주, 구매자 등 모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UN의 반인신매매협약에 따라, 이 법은 피해자의 "동의"를 무효로 간주하며, "취약성의 악용"을 인신매매의 한 방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팽배한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며, 여러 주변 요인으로 인해 성산업에 유입됨으로써 스스로 "칼날을 손에 쥐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로써 가해자는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즉, 한국의 관련 법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법에서도 피해자의 동의나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성매매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동일 법 제4조에서는 개인을 착취 산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고용 및 입양, '우편주문 신부(mail-order-bride)', 섹스관광 조직, 성매매업에서의 고용 및 보유 등 모든 인신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백만 - 2백만 페소에 이르는 벌금형과 20년 징역형에 처할 것을 명시한다. 홍보, 건물 임대, 인터넷 이용 등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공모 활동은 5십만 - 1백만 페소의 벌금형과 15년 징역형에 처

'성매매' 자체를 독립으로 규정, '인신매매'를 각각의 한 형태로 분리 않는다.

한다.

제11조는 구매행위 처벌을 규정하여 초범의 경우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에 처하고, 재범은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것을 규정한다.

피해자의 보호자, 조직, 군인을 포함한 정부 관료에 의한 가해 행위는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한다. 이 규정은 특히 눈여겨볼 만한데,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산업의 최대 구매자가 군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한 인신매매 행위는 2백만-5백만 페소의 벌금형과 종신형에 처한다.

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쉽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견디기 힘들며,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매우 길게 잡고 있다. 고소는 피해자 뿐 아니라 범죄를 인지한 누구라도 가능하다(제8조). 따라서 "피해자가 주저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 건수가 적다는 말이 있으나,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 책임이 피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은 또한 기밀 유지 조항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언론 등에 의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경우 이 역시 처벌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은 쉼터, 상담, 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또 법무부가 규정한 목적자 보호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송환시 위험이 따르는 경우 필리핀 정부는 기착국에 피해자의 체류 연장 허가를 구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항은 미성년자와 18 이상의 여성 모두에게 해당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다른 국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법에서도 아동은 보호를 받는 반면, 성매매 피해 여성은 범죄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러시아나 중국 여성들의 기착국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보호 조항은 필리핀 국적 외의 여성에게도 적용된다.

필리핀 법률은 또한 여성을 위한 기회 창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빈곤과 성차별이 여성을 성매매로 내모는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 뿐 아니라,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또, 모든 정부 부처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부 부처간 인신매매 방지위원회 (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라는 감시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아동권리, 여성, 이주노동자 등 세 곳의 NGO 대표가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CATW-AP는 여성단체 대표로 지명되었다. 대표

입법 활동 라타 이주 필리핀 여성-성노동자의 유럽.

CATW-AP는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필리핀 여성들이 해외의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 양원과 협력 하에 필리핀 내 인신매매 처벌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국내의 심각한 실업난의 돌파구로써 해외로 인력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여성 실업이 더 높은 상황에서 수출 노동력의 여성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1일 최소 2000명의 필리핀인이 해외로 나가며, 그 중 74%가 여성이다. 그리고 매달 최소 40명이 사망자로 귀국한다.

여성이 필사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현실은 전반적인 추세로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나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학대와 살해, 일본 야쿠자에 의한 유흥업 종사자의 착취 및 살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의 험난한 삶과 의문사, 중동에서 일하는 어린 하녀의 강간 및 유죄 판결 등의 이야기가 넘쳐나도, 여권을 받으려고 정부 기관에 줄을 서는 여성의 수는 더 늘어만 간다. 이들의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불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업용 비자를 받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자녀를 둔 어머니나 큰 딸들은 6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고등학교를 마치면 직장을 찾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어서 운에 맡기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근친 강간에서 벗어나고, "운이 좋다면"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사회적 경제적 상승을 꿈꾸는 그런 소망들을 우리에게 말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우리에게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는 소식이 두절된 딸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신매매 상황은 대체로 유사하다. 송출자가 단체로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알아서 2주 안에 출국 서류를 처리한다. 공항과 기착국에는 같은 패거리가 있어서 이 여성들을 바로 마사지 업소나 나이트클럽으로 위장한 유흥업소로 데려간다. 이 여성들은 도착한 날 저녁에 앞으로 손님에게 성 접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신매매가 국내에서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모든 인신매매 사건이 불법 모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았다. 송출자의 상당수는 허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적법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을 착취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입법 활동 중에 우리는 그렇게 인신매매의 일반적인 유형과 미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행위가 개입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를 "운이 나쁘거나" 예외적인 이주 사례로 간주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인신매매가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자본가들이 저지르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세계적인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 그동안 이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여성과 아동의 몸을 착취하여 이윤을 취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직접 인신매매의 문제와 경향, 원인, 그 영향 등을 설명하였다. 언론은 수많은 여성들이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 인신매매되고, 도시에서 여급이나 판매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송출자에게 딸을 맡긴 시골 어머니들의 사례에 경악하였다.

국내외 인신매매의 주요 종착역인 성매매와 싸우면서 우리는 가해자들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여성들의 열망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고, 꿈과 상처투성이의 삶을 지닌 젊은이들을 모집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업가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한 방법으로 '취약성의 악용'을 포함시켰다. 강제, 유인, 사기 및 기타 방법들은 여성의 현실과 그들이 착취 당하는 기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력 모집, 송출, 은신, 보유 또는 구매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의상 성매매도 인신매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에 연루되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을 착취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에는 착취할 목적으로 개인을 고용 또는 보유하는 성매매 관리책이나시설 소유주 등 착취의 목적으로 개인을 사는 구매자가 포함된다.

CATW-AP는 이 법이 제대로 구현되는가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이 법은 성폭력 방지법, 성희롱 방지법, 가정폭력 방지법 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싸워서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경찰과 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인식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거나 말거나 간에 경찰과 검사는 여성을 범죄자로 기소하던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그들을 피해자로 이해하고 보호하며 인간을 성적으로 착취하여 수익을 얻는 인신매매, 성매매의 실질적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도록 전국을 돌며 피해자

와 이 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는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 부랑자법(vagrancy law)이 필리핀 형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 법률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부랑자법이 폐지될 때까지 이 진보적인 특별법을 이용할 것이다. 또 성착취 피해자의 보호를 명시한 이 새 법률과 UN의 반인신매매협약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다 많은 검사와 경찰, 판사들이 의식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골에서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주요 기착지인 퀘종의 길거리에서 체포되는 여성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매해 10월이면 우리는 생존자들과 함께 '성매매 없는 날' 행사를 열고, 지방의 관계당국과 함께 인신매매 방지법 적용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또 교육 캠프를 열어 젊은 남성들에게 성평등 문제와 성, 성매매에 대해 교육한다. 이 캠프를 통해 남성들은 '남성다움'이 여성폭력 특히,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써 이 남성들은 성을 재정의하고 성착취 근절을 위한 운동에 서서히 참여하게 된다.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인도 여성들 역시 인신매매 방지법을 이용하여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윤락업소 업주나 브로커, 구매자 등 실질적인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는 또 지역 단위에서 UNIFEM과 협력하여 성평등 및 성매매에 대해 대중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가부장제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필리핀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화, 엘리트 정치, 가부장제 등 여성의 취약성을 가속화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부장 남성들의 이윤 착취를 증가시키는 모든 구조와 싸우고 있다.

일본 내 反인신매매 NGO간의 네트워크 증대

-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일본 네트워크 -

케이코 타마이, 아시아재단 프로그램 국장

연예·인상비자권 입국
전체 - 12만
일본 - 25리피인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일본 네트워크(JNATIP)'는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일본 내 28개 NGO와 140여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협력체이다. 아시아재단은 이 네트워크의 운영 회원이다. 우리의 목표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자 재화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내게 JNATIP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조직의 해체가 목표라고 답했다. JNATIP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모인 단체와 개인들의 협력체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해체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 후에도 JNATIP는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정착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JNATIP는 그 사명을 다하고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실 조사 작업 착수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대책은 너무 미비하다.

JNATIP의 세 가지 핵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

1990년대 말의 러시아·동유럽 등지에서도 유행되기 시작.

관광비자권 입국했다가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기도 함. 하지만 성매매 산업의 이익 면서 노동자 특에 매는 보존장치가 없다.

2.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포함한 법률 제안 및 입법

3.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대

JNATIP는 2003년 1월 도쿄에서 아시아재단 및 ILO와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으로 유입되는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큰 힘을 얻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NGO, 일본 내 외국 대사관, 정부 내각 및 경찰청이 수용 시장으로써의 일본 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포럼이 마련되었다. 일본 정부가 한 달 전에 UN의 인신매매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인신매매 협약)에 서명하고, 이 회의 전에는 일본 내에 인신매매에 관한 정책이 실제적으로 전무했던 탓에, 이 심포지엄은 외신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았다. 심포지엄 조직위의 입장에서 나는 이 회의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뒤이은 행동이 없었다면 이 심포지엄은 몇 페이지짜리 회의 보고서를 내고 그쳤을 것이다. 보고관(rapporteur)을 중심으로 우리는 정기적인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회의 중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내각에 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내각 의원들은 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자료가 있을리 만무했다. 따라서 우리의 첫 소임은 일본 내 인신매매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2003년 6월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스터디 그룹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활동의 근간이 될 조직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조직이 후에 JNATIP가 되었다. 이후 오카노미주 대학교의 F-GENS(Frontiers of Gender Studies COE Program)의 도움으로 우리의 노력은 "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JNATIP/F-GENS 연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다. JNATIP는 위에 기술한 목표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인신매매는 지하세계 사업인 동시에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지원 기관이 제공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일본 내 인신매매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인신매매 경로가 무엇이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 기관에 연락하게 되는지를 파악한다면 입법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요인을 아는 것도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송출국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어떠한 생활을 기대하는가? 이주 전과 후 그들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내외 지원기관과 일본 내 대사관 및 피해자들로부터 1년 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2005년 6월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NGO와 학계가 협력하고, 또한 태국, 콜롬비아 대사관 등 일본 내 외국 대사관들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실제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대사관과 NGO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학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분석 및 기록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대사관은 타국에 사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본이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송출국과 유입국의 협력 없이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피해자 연구는 NGO, 대학 및 대사관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공조는 JNATIP 활동의 핵심이다. 우리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여성 쉼터, 일본 내 외국인을 지원하는 NGO 네트워크, 인권, 차별 철폐, 성평등 및 이동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시민운동, 국제관계, 이주노동, 사회복지 및 기타 관련 분야에 수년간 참여해온 학자, 변호사, 사회복지사, 언론인, 학생들이 있다. 우리 사무국 운영비는 기부금에 의존하며 프로젝트는 보조금과 기금마련으로 충당한다. 우리 JNATIP는 숭고한 대의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내어줄 수 있는 개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 인신매매를 둘러싼 복잡한 다차원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

2. 국제적 협력의 불가피성

인신매매는 국경이 없는 초국적 조직범죄이다. 인신매매에 대한 개별국가의 정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제적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은 열릴 수 없다. 인신매매의 기저에는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경제적 격차, 이주 노동과 세계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미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JNATIP의 또 다른 관심분야이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가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경우, 과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여성에게 돌아갈 자리가 있을 것인가? 현실은 가혹하다. 때로는 피해자의 가족이 인신매매 브로커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을 괘시하여 그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는 경제적 자립을 얻지 못하고 돈을 벌려는 꿈을 버리지 못해 다시 인신매매의 수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 사업은 다른 세계에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 위에서 자라나 번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과거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국내외 NGO들 간에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NGO의 힘은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그간 일본은 인신매매 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고, 마침내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직 범죄의 활동에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대응할 뿐,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소용

이 없다. 단순히 외국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부추길 것이다. 유입국으로써의 일본 시장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 외국 여성을 착취하는 지하세계 사업을 용인했고, 인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3. 시민사회의 역할

이제까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NGO가 일본 내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자금 지원과 행정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NGO와 정부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비단 인신매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사회 관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NGO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일본에서는 특히 정부와 NGO의 관계를 수평적 불평등 또는 대립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NGO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면서 또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명확히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은 정책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피해자와 접촉하는 능력에 있으며, 바로 NGO가 이 열쇠를 쥐고 있다. 서두에 제시한 JNATIP의 세 가지 핵심 사업은 국제적 협력과 NGO-정부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세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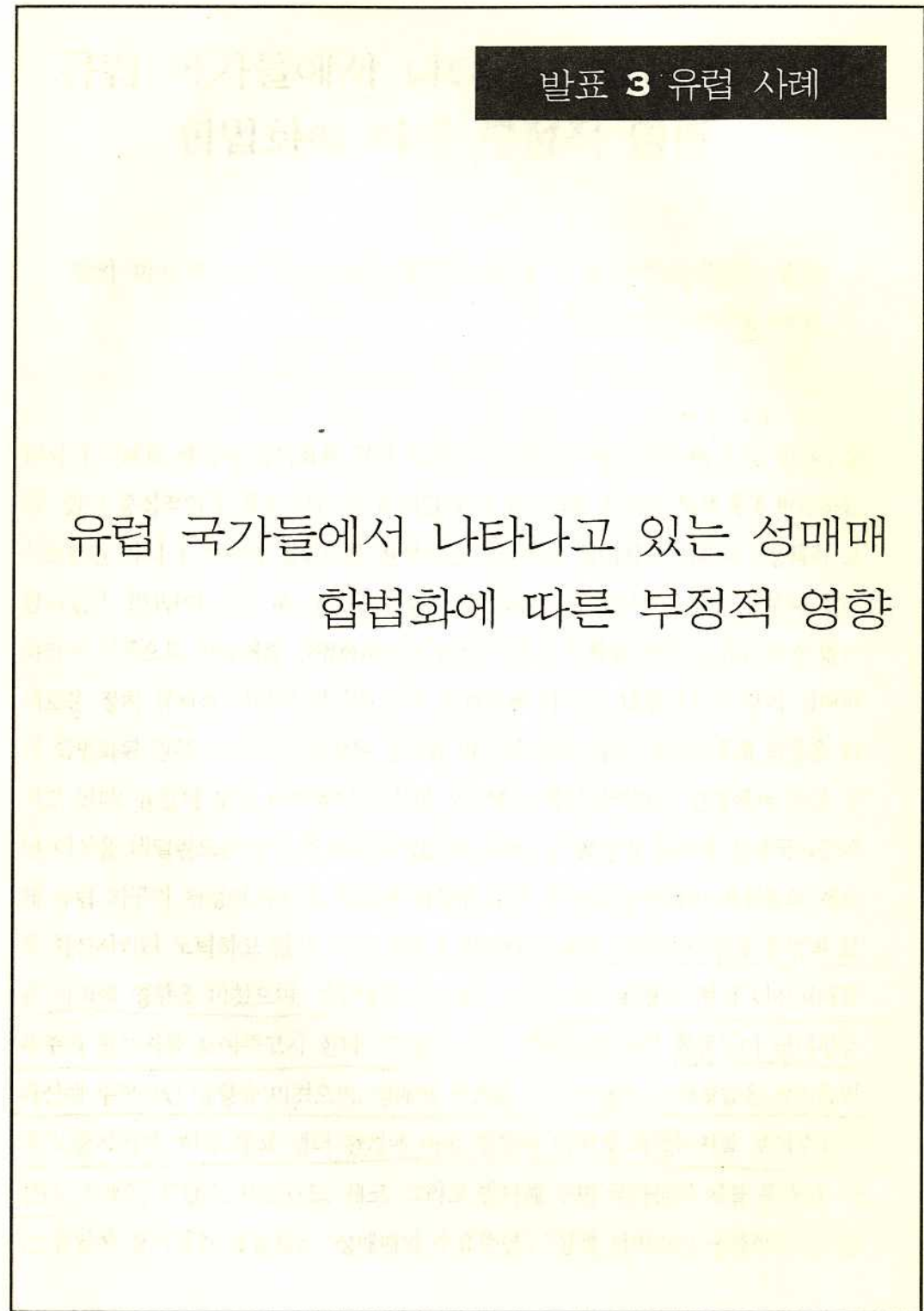
NGO-정부간 협력의 첫 단계로써 JNATIP는 정부기관 전담반(내각 비서실, 경찰청, 법무부, 외무부, 보건노동복지부)의 집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마련하는데 협력하였다. 이후 2004년 12월에 정부는 '反인신매매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JNATIP는 이 계획이 실제 구현되는지, 기대 결과가 현실화되는지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NGO와 정부가 정보와 문

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JNATIP의 장기적 목표는 일본 내에서 인신매매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인신매매가 범죄행위이며 일본이 인신매매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없는 대중적인 자각을 끌어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인신매매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지원하고 국내외 언론의 도움으로 정보를 배포하였다. 우리는 관련 기관들이 자체 네트워크의 이점을 활용하고 지역 자치기구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도출하고 일본 전역에서 행동을 확산시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발표 3 유럽 사례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말카 마르코비치,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 근절 운동(프랑스), 유럽
인신매매방지연합 대표

19세기 이래로 성매매 합법화를 위한 정치적 압력은 전 세계적인 여성 및 인권운동에 있어 중심적인 논쟁적 이슈 중 하나였다. 유럽지역은 현대판 노예제에 반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론적·정책적 요람이었다. 10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유럽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보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려는 낡은 이론의 부활을 목격해왔다. 국경 없는 새로운 정치 경제적 지역의 성립과 공동 경제체제 하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성매매가 합법화된 일부 나라들은 똑같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확산시키려는 경쟁에서 최근 십년 이상을 네덜란드는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특히 구 공산권 블록의 신생국가들에게 유럽 기구의 행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제도를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나는 성매매 합법화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유럽의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산업의 일상화, 그리고 섹스관광과 성적 인신매매를 부추겨 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합법화를 위한 활동들이 남녀평등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매매 구조를 통해 주변화된 여성들을 성적폭력에 노출시키며, 이를 통해 젠더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그리고 발틱해 주변 국가들의 예를 통해서, 나는 유일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성매매의 수요측면", "성적 서비스의 구매행위"를 범

최화함으로써, 그 폐해를 가시화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을 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구분하는 흐름이 나타남.

(중의라 '강제'의 구분)

유럽 연합 시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이로서 성매매가 '노동'의 한 영역인 것처럼 여겨짐 (네덜란드의 영향).

스웨덴 모델 - 성구매자를 범죄화. 1999년, 성매매 범죄화 법안. 80% 30%이

이 법안이 찬성. '성매매는 필요악'에 대한 반대에 사례.

유럽의 성산업은 인종차별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독일 - 성매매 합법화 사례.

이러한 상황은 아동해 독일 극경에서 교외 성매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된 때 합법화된 국가는 경우하는 방식이 선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합법화 (성매매) 인 처벌을 이렇게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아동 성매매가 300배 늘어남. (대부분 나이지리아 출신 여성)

법적으로 접근할 때에 인신매매-성매매의 모관적 관계에서 독립적

접근해야 한다. 가늠자뿐만 아니라 성구매자까지 불법화해야 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지책 경제 발전의 수준 사이의 연관관계는 중요한

지점이 아니다. (정확과)

이러한 성산업과 경제 규모 간의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발표 4 한국 사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성매매방지법¹⁾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 글을 시작하며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되고, 그 6개월 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많은 변화와 격변의 기간이었고 우리사회 인권문제를 진전시켜나가는 시기였다. 경찰이 발표한 성매매 관련사범과 단속, 수많은 사례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사회 만연한 부정부패와의 싸움이었고 정부정책을 새로이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가로 하여금 성매매알선등 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집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동안 국가가 성매매를 방치, 묵인, 방조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성매매산업을 확장하고 키워온 것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게 됨으로써 성매매알선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매매산업구조를 재편해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2가지 법을 이 글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라고 표기한다.

나가고 공권력의 부정부패, 유착비리, 접대문화개선,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 등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현 상황의 한계와 문제점, 과제를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²⁾들의 입장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정책추진방향과 법집행과정에 관한 평가

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내용과 과제

2004년 3월 31일 여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내 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³⁾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⁴⁾을 설치(2004년 11월 10일)하여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계획, 진행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정부부처간의 업무협조와 역할 조정 등을 하고 있다.

3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집결지 단계적 폐쇄, 2)성매매 위반업소 행정감시 강화와 알선업주의 성매매로 인한 이익 몰수, 추징, 3)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총체적 지원, 4)집결지 인근 현장상담센터 2004년 10개소 설치, 2007년까지 65개소 설치, 전문상담원 2007년 까지 240명으로 확대, 5)성매매피해 여성 법률지원 강화, 탈성매매자활지원센터 2004년 2개소에서 16개소 확대개소, 6)

- 2) 성매매여성을 위한 구조, 지원활동과 상담소, 지원시설운영, 자활센터활동 및 성매매근절운동을 진행하는 단체를 이글에서는 현장활동단체 또는 현장단체라 칭한다.
- 3) 연합뉴스, 2004.3.31
- 4) 점검단의 기능 및 역할: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점검, 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성매매 방지 관련 중요정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 개선. 그밖에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http://www.mogef.go.kr/mogef/common>

성매매방지점검단 출범, 종합대책 진행과정 점검, 시도 성매매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등이다.

특히 집결지 단계적 폐쇄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04년 집결지 폐쇄의 법적근거가 되는 '집결지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법제정을 추진, 2007년부터는 청소년 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결지를 시작으로 전국 69개소의 집결지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성부는 이에 대한 추진 사업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법 제정 추진 상황으로 법안 초안은 이미 마련되었으며, 여론의 동향을 고려하여 적정시기에 입법절차를 착수⁵⁾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 한바 없으며, 나아가 집결지 폐쇄 등에 따른 법률을 주관할 부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논의가 필요⁶⁾하다고 하였으나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듯 정부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내용전달이 정확히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집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조차도 정부정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9월 23일 법이 시행되고 경찰이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자 착취적 성매매를 통해 불법적 수익을 지속하려는 업주들은 여성들을 앞세워 생존권보장과 유예기간 인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위에 나선 집결지역 여성들 중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와 정부정책을 이해한 두 지역(부산, 인천) 여성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지역을 자활을 위한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집결지 사업(집결지시범사업)을 2004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5) 제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 2004.12.30. 35p
- 6) 상동